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373 발의연월일: 2025. 5. 2.

발 의 자: 박형수·강승규·조배숙

이성권 • 배준영 • 강대식

주호영 • 권영진 • 나경원

김형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주요국은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바,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, 안보심의 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임

주요내용

가.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근거 명확화(안 제4조제4항, 제5항, 제6항)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 장을 주는지 여부를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제도의 근거 조항을 명확히 함.

- 외국인투자 안보심의의 대상,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율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고, 외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서 국내기업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안보심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.
- 나. 외국인투자위원회 권한 강화(안 제27조제1항, 제3항, 제5항)
 -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
 - 외국인투자위원회 산하에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를 두 어, 외국인투자의 국가의 안전 유지 지장 초래 여부를 사전에 심 의하도록 함.
- 다. 외국인투자 신고 관련 규정 명확화(안 제5조제1항, 제2항, 제3항, 제4항)
 - 외국인이 사후신고를 통해 안보심의를 거치지 않고 국내 기업의
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, 투자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하도록 함.
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가의 안전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외국인의 투자 신고를 보류·거부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행정청의 보고명령 권한 등 강화(안 제28조제2항, 제5항)
 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.

- 국가의 안전 보장 등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 도록 함.

마. 이행강제력 제고(안 제21조, 제34조, 제35조)

- 국가의 안전 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함.
- 제4조제4항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절차와 관련하여 미신고·등록 (변경신고·변경등록 포함),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·등록한 자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심의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한 자,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한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함.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 없이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 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.

법률 제 호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가 제2항제1호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.
- ⑤ 제4항의 심의 · 제한의 대상 및 절차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.
- ⑥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의 범위에는 제2조제1항제 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이외에도 외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을 통해 다른 대한민국의 법인 또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
제5조제1항 중 "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"를 "각 목 또는 제4조제6항의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경영상 지배권 취득, 주요 사업·기술 분야 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신고하

여야 한다.

제5조제3항 중 "신고할 수 있다"를 "신고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을 보류 또는 거부할 수 있다.

제2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기준"을 "요건"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

제27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둔다"를 "두고,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 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(이하 "전문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외국인투자위원회와 실무위원회"를 "외국인투자위원회, 실무위원 회 및 전문위원회"로 한다.

12.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

제28조제1항 중 "외국투자가"를 "외국인, 외국투자가"로 하고, 같은 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제2호중 "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"을 "해당하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"으

로 한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(이하 "관계 행정기관등") 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"자(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는 1년"을 "자는 5년"으로, "1천만원"을 "5억원"으로, "처한다"를 "처한다(법인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"로 하며,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제2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
- 1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제4항에 따라 제한하기로 결정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 을 취득한 자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법인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.
- 1. 제4조제4항과 관련하여 고의로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(변 경등록 포함)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

으로 신고 · 등록한 자

2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 이전에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

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제37조 및 제38조로 하고,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6조(벌칙)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(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)	제4조(외국인투자의 자유화 등)
① ~ ③ (생 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
	인투자가 제2항제1호 국가의 안
	전 유지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
	는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
	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
	<u>있다.</u>
<u><신 설></u>	⑤ 제4항의 심의・제한의 대상
	및 절차,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u><신 설></u>	⑥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
	외국인투자의 범위에는 제2조
	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
	이외에도 외국인이 대통령령으
	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
	자기업을 통해 다른 대한민국의
	법인 또는 기업을 실질적으로
	지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.
<u>④</u> (생 략)	⑦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5조(외국인투자 신고) ① 외국	제5조(외국인투자 신고) ①
인(제2조제1항제4호가목2)에 해	
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	

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 은 제2조제1항제4호 <u>각 목에 해</u> 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 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을 취득한 후 6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. <단서신설>

1. ~ 6. (생략)

③ 외국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비율(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외국투자가 취득주식등의 비율을 말한다. 이하같다)등 산업통상자원부렁으로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산업통

<u>각 목 또는</u>
제4조제6항의
②
<u>다만, 경</u>
영상 지배권 취득, 주요 사업ㆍ
기술 분야 투자 등 대통령령으
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
우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신고
하여야 한다.
1. ~ 6. (현행과 같음)
③

상자원부장관에게 <u>신고할 수 있</u> <u>다</u>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 를 받으면 지체 없이 신고인에 게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 다. <단서 신설>

제21조(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) 저 ① ~ ④ (생 략)

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<u>기준</u>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1.·2. (생 략) <신 설>

⑥ (생략)

제27조(외국인투자위원회) ① 다 저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

	신고하여야 한
	<u>다</u> .
	4
	<u>다만,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</u>
	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	에는 신고증명서의 발급을 보류
	또는 거부할 수 있다.
4]	21조(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)
	① ~ ④ (현행과 같음)
	⑤
	<u>요건</u>
	,
	1. • 2. (현행과 같음)
	3. 제4조제4항에 따른 심의를
	받지 않고 대한민국 법인 또
	는 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
	<u>경우</u>
	⑥ (현행과 같음)
1	27조(외국인투자위원회) ①

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외국인 투자위원회를 둔다.

1. ~ 11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12. (생략)

- ② (생략)
- ③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·조정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④ (생략)
-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<u>외국인투자위원</u> <u>회와 실무위원회</u>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

1. ~ 11. (현행과 같음)				
<u>12.</u> 제4조제6항에 따른 외국인				
투자가 국가의 안전 유지에				
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관한				
<u>사항</u>				
<u>13</u> . (현행 제12호와 같음)				
② (현행과 같음)				
③				
두고, 외국인투자가				
국가의 안전 유지에 지장을 주				
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외				
국인투자 안보심의 전문위원회				
(이하 "전문위원회"라 한다)를				
<u> 둔다</u> .				
④ (현행과 같음)				
5				
외국인투자위원				
회, 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-				

로 정한다.

제28조(보고·조사 및 시정 등) 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주무 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<u>외국투자</u> 가, 외국인투자기업, 대한무역 투자진흥공사의 장, 관계 금융 기관의 장, 그 밖의 이해관계인 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~ ④ (생 략)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투자가, 외국인투

· 』28조(보고·조사 및 시정 등)
①
외국인, 외
<u>국투자가</u>
<u>.</u>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
에 따른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
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
및 유관기관(이하 "관계 행정기
관등")의 장에게 관련 자료 또
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
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
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
에 따라야 한다.
$\underline{3} \sim \underline{5}$ (현행 제2항부터 제 4
항까지와 같음)
<u>⑥</u>

자기업, 외국인이 투자한 자금 및 자본재를 도입하거나 사용하 는 자,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제4조제2항 각 호에 <u>해당하</u>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

⑥·⑦ (생 략)

제35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자(기업의 경</u> <u>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</u> 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<u>1천만</u> <u>원</u> 이하의 벌금에 <u>처한다</u>.

<신 설>

- <u>1</u>. (생 략)
- 2.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

1. (현행과 같음)
2 해당하거
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
⑦・⑧ (현행 제6항 및 제7항과
<u></u> 같음)
제35조(벌칙) ①
자는 5년
<u>/ L 0t</u>
5억원 -
법인 <u>처한다(법인</u>
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
<u>자를 포함한다)</u> .
1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
제4항에 따라 제한하기로 결
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
위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

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한 자

2. (현행 제1호와 같음)

<삭 제>

턴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
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
 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
 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

3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- 3. (현행과 같음)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(법인 또는 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).
- 1. 제4조제4항과 관련하여 고의로 이 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 (변경등록 포함)을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 정한 방법으로 신고·등록한 자
- 2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4조 제4항에 따른 심의 이전에 대 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의 주 식 등을 취득한 자
- 제36조(벌칙)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(기업의

	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
	<u>다)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</u>
	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<u>제36조</u> · <u>제37조</u> (생 략)	<u>제37조</u> · <u>제38조</u> (현행 제36조 및
	제37조와 같음)